

서울특별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0
------	-----

2014. 12. 4.
기획경제위원회

I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1월 4일,
김현아·박운기의원(찬성의원 18명)

나. 회부일자 : 2014년 11월 1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2014. 12. 4)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수정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김현아 의원)

가. 제안이유

- 민간의 참여와 투자 촉진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사회성과 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사회성과 보상사무 활성화를 위해 운영기관 선정방식을 변경함(안 제7조).
- 사회성과 보상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을 변경함(안 제 12조~제14조).
- 각종 용어와 서식을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함.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민간의 참여와 투자 촉진을 통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사회성과연계채권의 개념과 의의¹⁾

- 사회성과연계채권(이하 “SIB”)은 정부가 공공사업 성과목표 달성을 민간 전문사업자와 약정하고 사회적 성과목표가 달성된 경우 해당 사업의 예산절감효과에 비례하여 지급청구

1) 경기개발연구원(2013, 경기도의 사회성과연계채권 도입 방안)과 자본시장 연구원(2012, 사회성과연계채권 활용방안) 참조.

권이 발생하는 채권계약을 의미함²⁾).

- 2000년대 들어 복지재정 부담에 고심하던 영국과 미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SIB가 사회서비스 제공 방식의 새로운 모델로 각광받기 시작했고, 급속한 추세로 확산되고 있음.

〈그림 1〉 사회성과연계채권 투자구조



자료: Jeffrey B. Liebman, Social Impact Bonds(2011)

- SIB는 정부가 중간운영기관(SIBIO: Social Impact Bond-Issuing Organization)과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중간운영기관은 민간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발행해 공공사업 운영을 조달하게 되며, 약정된 사회적 성과가 달성된 경우 정부가 중간운영기관에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계약구조를 가짐.

2) 경제학자 로지 호레시(Ronnie Horesh)가 2000년 「사회정책채권(social policy bond)」를 통해 정부 지출을 보다 비용절감적이고 목표지향적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금융수단으로 사회정책채권(SPB) 도입을 제안하였음.

-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재정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SIB를 활용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최근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복지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증세없는 복지확대’를 실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기획재정부는 이미 ‘2014년 경제정책 방향’ 을 통해서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간 다양한 협력모델 발굴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해 SIB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히는 등 국내에서도 SIB 도입을 서두르고 있음.
- 이에, 서울시(이하 “시”)도 경계선급지능 및 경증지적장애 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SIB사업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기 위한 절차를 시행하고 있음³⁾.

다. 운영기관 선정 절차의 개선(안 제7조)

- 안 제7조는 시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민간투자 유치와 수행기관 선정·관리 등 보상사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운영기관 선정 절차의 개선사항을 정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현재의 공개모집 원칙을 유지하면서 민간법인이 사업을 기획하고 제안한 경우나 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한 경우에 단독심의회나 우선협상권 부여 등을 통해 운영

3) 시는 현재 「공동생활가정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 을 의회에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중에 있음.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는 SIB사업의 구조적 특성상 민간의 아이디어 제공과 참여가 필수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안자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민·관 협치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 하지만, 이런 특성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우선협상권이나 단독 심의권한 등 일종의 수의계약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경쟁을 통한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관련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 검토가 추가적으로 요구됨⁴⁾.
- 안 제7조제4항에서 공개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선정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정한 것은 운영기관 선정과 관련한 최소한의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조치로 판단됨.

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개선(안 제12조~제14조)

- 안 제12조는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해 설치·운영중인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각 보상사업 업무담당 부서에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함.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현재 위원회는 지난 8월 구성된 후 중간운영기관의 선정과 성과보상 지급 등 시가 수행하는 SIB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SIB사업을 총괄하는 경제진흥실내에 설치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보상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전문적인 심의능력 향상을 위해 각 보상사업별로 담당 부서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참고자료).
- 이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 제13조는 위원회의 구성을 10명이하로 조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도 개별 업무담당 부서가 정하도록 했으며, 안 제14조와 같이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기본계획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자율성을 보장하였음.
- SIB사업의 대상업무가 아동, 여성, 복지, 교육 등으로 각기 상이하고 그 업무의 특수성이 뚜렷한 상황에서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자율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은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시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기능, 위원구성, 의결, 분과위원회 운영 사항 등의 주요사항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자치법규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음⁵⁾.

5)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

- 또한,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고려하더라도 향후 SIB사업이 활성화 될 경우 전체적인 사업의 진행경과를 관리하고 사회 성과보상을 비롯한 전체적인 예산관리 등 총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여야 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70
----------	--------

제안년월일 : 2014년 12월 4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기관 선정과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담보하도록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운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사업 제안자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나. 심의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해 특별위원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
- 다.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상세히 정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2항부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기획하고 시에 제안한 민간 사업자가 운영기관 선정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운영기관 선정방법·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안 제12조제1항 중 “각 보상사업 업무담당 부서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한 분야

의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3명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위촉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안 제1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의 보상사업 총괄 업무담당 및 예산담당 부서장

안 제13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안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이 경미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 중 상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은 심의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는 사회투자 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⑨ 심의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u>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u>사회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u>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u>해결하여</u> 사회적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사회사업"이란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전적 예방활동과 문제해결을 통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을 말한다.</p> <p>2. "사회성과"란 민간이 사회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증진된 사회적 편익을 말한다.</p> <p>3. "사회성과보상"이란 민간이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사회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사회성과를 달성하는 경우에 약정된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울시"라 한다)가 사업비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p> <p>4. "사회성과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u>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u>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u>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u>사회문제를 예방 혹은 해결하여</u> 사회적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1. "사회성과"란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예방활동과 문제해결을 통하여 증진된 사회적 편익을 말한다.</p> <p>2. "사회성과보상"이란 사회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이 민간투자를 유치한 후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약정된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업비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p> <p>3. "사회성과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u>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u>〈개정안과 같음〉</u></p> <p>제2조(정의) <u>〈개정안과 같음〉</u></p>

이란 사회성과보상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민간사업자 간에 체결한 약정을 말한다.

5.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이라 한다)이란 서울시가 사회성과보상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사회사업을 말한다.

6. "운영기관"이란 서울시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 사회사업 수행기관 선정·관리, 사회사업 관리 등 사회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7. "수행기관"이란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으로 정한 사회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 단체, 조합 또는 개인을 말한다.

8.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이란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에 기반하여 민간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계약 또는 발행채권을 말한다.

제4조(대상사무) 보상사업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사업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거나 사회적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2.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민간의 행정참여와 투자를 통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사업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공고) ① 시장은 보상사무 및

이란 사회성과보상과 관련하여 시와 운영기관 간에 체결한 약정을 말한다.

4.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이라 한다)이란 시가 사회성과보상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시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와 수행기관 선정·관리 등 보상사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법인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란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으로 정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7.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이란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에 기반하여 민간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계약 또는 발행채권을 말한다.

제4조(대상사무) 보상사업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거나 사회적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2.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민간의 행정참여와 투자를 통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공고) ① 시장은 보상사업 개

제4조(대상사무) <개정안과 같음>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공고) ①~② <개정안과 같음>

운영기관의 선정기준·방법, 민간제안 사업 추진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7조(운영기관 선정) ① <생략>

②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사회성과 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제9조(사회성과 평가) 시장은 보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상사업에 대한 평가기준, 방법, 시기를 명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사회사업 평가를 위하여 상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성과보상) 시장은 보상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성과보상을 지급년도

말 및 운영기관의 선정기준·방법, 민간제안 사업 추진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기관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 1. 민간 법인이 사업을 기획하고 시에 제안한 경우
- 2. 시가 민간 법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경우 민간 법인에 대한 단독 심의나 우선협상권 부여 등을 통해 운영기관을 선정하되, 적격자가 아닐 경우 공개모집으로 전환한다.

④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성과 평가) 시장은 보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상사업에 대한 평가기준, 방법, 시기를 명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보상사업 평가를 위하여 상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성과보상) 시장은 보상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성과보상을 지급년도

제7조(운영기관 선정)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기획하고 시에 제안한 민간 사업자가 운영기관 선정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1. ~2. <삭제>

③ 운영기관 선정방법·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개정안과 같음>

제9조(사회성과 평가)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성과보상) <개정안과 같음>

<p><u>세출예산에 반영한다.</u></p> <p>제11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2조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운영기관에 보상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u></p> <p>1. ~ 6. <생략></p> <p>② <생략></p>	<p><u>예산에 반영한다.</u></p> <p>제11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u>운영기관에 보상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u></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 ② <개정안과 같음></p>
<p>제12조(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u>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p>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p> <p>2. 보상사업 및 운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p> <p>3. 평가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p> <p>4. 사회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p> <p>5. 보상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보상사업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12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u>각 보상사업 업무담당 부서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u></p> <p>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p>1. 보상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p> <p>2. 운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p> <p>3. 사회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p> <p>4. 보상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에 보상사업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12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u>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u></p> <p>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p>1. ~5. <개정안과 같음></p>
<p>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각 업무담당 부서의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p>	<p>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상정</p>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 수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의 사회투자 업무담당 및 예산담당 부서장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사회투자 및 사회적금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

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 수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의 보상사업 업무담당 부서장
3. 관련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4. 사회투자 및 사회적금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내용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각 보상사업별로 따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업무담당 부서에서 정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되는 안전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3명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위촉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 수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의 보상사업 총괄 업무담당 및 예산담당 부서장
- 3.~ 5. 〈개정안과 같음〉

③ 〈삭제〉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이 경미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 중 상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은 심의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는 사회투자 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⑨ 심의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이 경미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 중 상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은 심의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는 사회투자 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⑨ 심의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사회사업”을 “사업”으로, “해결하여”를 “예방 혹은 해결하여”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성과”란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예방활동과 문제해결을 통하여 증진된 사회적 편익을 말한다.
2. “사회성과보상”이란 사회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이 민간 투자를 유치한 후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약정된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업비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성과보상계약” (이하 “보상계약” 이라 한다)이란 사회성과보상과 관련하여 시와 운영기관 간에 체결한 약정을 말한다.
4. “사회성과보상사업” (이하 “보상사업” 이라 한다)이란 시가 사회성과보상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운영기관” 이란 시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와 수행기관 선정·관리 등 보상사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법인을 말한다.
6. “수행기관” 이란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으로 정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7.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이란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에 기반하여 민간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계약 또는 발행채권을 말한다.

제4조제1호 중 “사회사업으로”를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로 하고, 제2호 중 “사회사업”을 “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상사무”를 “보상사업 개발”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운영기관 선정) ① 시장은 보상계약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기획하고 시에 제안한 민간 사업자가 운영기관 선정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 선정방법·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중 “사회사업”을 “보상사업”으로 한다.

제10조 중 “세출예산”을 “예산”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제12조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한다.

제12조부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상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2. 운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회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4. 보상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상사업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상정되는 안전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3명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위촉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 수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의 보상사업 총괄 업무담당 및 예산담당 부서장
3. 관련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4. 사회투자 및 사회적금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제8항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서울특별시 <u>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u>	서울특별시 <u>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u>사회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u>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혹은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사업"이란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u>사전적 예방활동과 문제해결을 통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을 말한다.</u> 2. "사회성과"란 민간이 사회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증진된 사회적 편익을 말한다. 3. "사회성과보상"이란 민간이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u>사회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사회성과를 달성하는 경우에 약정된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울시"라 한다)가 사업비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u> 4. "사회성과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이란 <u>사회성과보상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민간사업자</u> 간에 체결한 약정을 말한다. 5.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이라 한다)이란 <u>서울시가 사회성과보상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사회사업</u> 을 말한다. 6. "운영기관"이란 <u>서울시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 사회사업 수행기관 선정·관리, 사회사업 관리 등 사회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u> 을 말한다. 7. "수행기관"이란 <u>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으로 정한 사회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 단체, 조합 또는 개인</u> 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삭제) 1. "사회성과"란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u>예방활동과 문제해결을 통하여 증진된 사회적 편익</u> 을 말한다. 2. "사회성과보상"이란 <u>사회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이 민간투자를 유치한 후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약정된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업비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u> 3. "사회성과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이란 <u>사회성과보상과 관련하여 시와 운영기관</u> 간에 체결한 약정을 말한다. 4.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이라 한다)이란 <u>시가 사회성과보상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사업</u> 을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u>시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와 수행기관 선정·관리 등 보상사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법인</u> 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란 <u>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으로 정한 사업</u> 을 직접 수행하는 <u>법인</u> 을 말한다.

<p>8.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이란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에 기반하여 민간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계약 또는 발행채권을 말한다.</p>	<p>7.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이란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에 기반하여 민간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계약 또는 발행채권을 말한다.</p>
<p>제4조(대상사무) 보상사업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조제1호에 따른 <u>사회사업</u>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거나 사회적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2. 그 밖에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민간의 행정참여와 투자를 통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사회사업</u> 	<p>제4조(대상사무) 보상사업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조제1호에 따른 <u>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업</u>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거나 사회적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2. 그 밖에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민간의 행정참여와 투자를 통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사업</u>
<p>제5조(기본계획의 수립·공고) ① 시장은 <u>보상사무 및 운영기관의 선정기준·방법, 민간제안 사업 추진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u>(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5조(기본계획의 수립·공고) ① 시장은 <u>보상사업 개발 및 운영기관의 선정기준·방법, 민간제안 사업 추진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u>(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운영기관 선정) ① <생략></p> <p>② 운영기관 선정은 <u>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u></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u>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7조(운영기관 선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운영기관 선정은 <u>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기획하고 시에 제안한 민간 사업자가 운영기관 선정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u></p> <p>③ 운영기관 선정방법·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u>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u></p> <p>④ <u>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제9조(사회성과 평가) 시장은 보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상사업에 대한 평가기준, 방법, 시기를 명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u>사회사업</u> 평가를 위하여 상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p>제9조(사회성과 평가) 시장은 보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상사업에 대한 평가기준, 방법, 시기를 명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u>보상사업</u> 평가를 위하여 상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p>제10조(성과보상) 시장은 보상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성과보상을 지급년도 <u>세출예산</u>에 반영한다.</p>	<p>제10조(성과보상) 시장은 보상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성과보상을 지급년도 <u>예산</u>에 반영한다.</p>

<p>제11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2조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에 보상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② <생략></p>	<p>제11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u>운영기관에</u> 보상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u>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u>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p>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p> <p>2. 보상사업 및 운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p> <p>3. 평가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p> <p>4. 사회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p> <p>5. 보상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보상사업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12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u>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u>를 둘 수 있다.</p> <p>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p>1. 보상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p> <p>2. 운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p> <p>3. 사회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p> <p>4. 보상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에 보상사업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생략></p> <p>1. 시의회 의원</p> <p>2. 시의 사회투자 업무담당 및 예산담당 부서장</p> <p>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p> <p>4. 사회투자 및 사회적금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p> <p>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p> <p>③ <생략></p>	<p>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상정되는 안전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3명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위촉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1. 시의회 의원</p> <p>2. 시의 보상사업 총괄 업무담당 및 예산담당 부서장</p> <p>3. 관련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p> <p>4. 사회투자 및 사회적금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p> <p>5.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제1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⑦ <생략>

⑧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⑨ <생략>

제1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심의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⑨ <현행과 같음>